

● 제327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2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2297, 2298

I. 예산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4. 11. 01.
다. 회 부 일 : 2024. 11. 04.

2. 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세입예산

- 2025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 최종예산 대비 294억원(13.2%) 증가한 2,517억원으로 편성되었음.

〈표〉 2025년 시민건강국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최종예산	2025년도 예산(안)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222,285	251,688	29,403	13.2%
일반회계	222,285	251,688	29,403	13.2%

나. 세출예산

- 2025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최종예산 7,085억 원 대비 155억원(△2.2%) 감소한 6,930억원으로 편성되었음.

〈표〉 2025년 시민건강국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최종예산	2025년도 예산(안)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147,527) 708,494	(×117,400) 693,041	(×△30,127) △15,453	△2.2%
일반회계	(×147,527) 708,494	(×117,400) 693,041	(×△30,127) △15,453	△2.4%
행정운영경비	(×398) 10,106	(×398) 10,814	(×-) 708	7.0%
재무활동 (반환금및기타)	17,656	1,683	△15,973	△90.5%
사업비	(×147,130) 680,733	(×177,002) 680,544	(×29,872) △189	△0.0%

다. 기금운용계획안

- 2025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규모는 182억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206억원 대비 23억원(△11.3%) 감소한 규모임.

〈표〉 2025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비율)

부 서	2024년도 최종예산	2025년도 예산(안)	증감	
			증감액	증감률
식품정책과	20,559	18,231	△2,328	△11.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세입 예산안 검토

가. 2025년도 세입예산안 총괄 현황

-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2,517억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294억원(13.2%) 증액 편성되었음.

〈표〉 2025년 시민건강국 세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2024년도 최종예산(①)	2025년 예산안(②)	2024년 대비 증감액 (② - ①)	증감율(%)
222,285	251,688	29,403	13.2%

나. 2025년도 세입예산안의 주요 특징

- 2025년도 시민건강국 주요 세입원은 '국고보조금등'과 '세외수입'이며, 이중 '국고보조금등'은 1,774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7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718억원으로 전체의 28.5%를 차지하고 있음.
- 세입 증가(294억원)의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금등'(2024년 최종예산: 1,475억원 → 2025년 예산(안): 1,774억원)에서 전년 대비 299억원이 증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코로나19 백신접종 구매비 지방비 부담률 신설(169억원 증가)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국비 교부액 증가(44억원) 등이 반영된 결과임.

〈표〉 2025년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세입내역
	2024 최종예산	2025 예산(안)	증 감	증감률	
일반회계	222,285,129	251,687,898	29,402,769	13.2%	
세외수입	71,885,562	71,809,257	△76,305	△0.1%	
경상적세외수입	40,990,809	38,059,655	△2,931,154	△7.2%	
재산임대수입	419,356	288,689	△130,667	△31.2%	
공유재산임대료	419,356	419,356	115,596	27.6%	· 어린이/은평/서북병원 부설주차장 등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62,321	183,548	121,227	194.5%	
주차요금수입	57,464	54,282	△3,182	△5.5%	· 보환연 부설주차장 수입 · 서북 거주자우선주차장 수입
기타사용료	4,857	129,266	124,404	2561.3%	· 구 용인정신병원 사용료 · 은평병원/서북병원 이동전화중계설비 전기료 등
수수료수입	39,575,082	36,738,613	△2,836,469	△7.2%	
증지수입	297,137	261,140	△35,997	△12.1%	· 보환연 시험검사 수수료
보건의료수수료	39,227,945	36,477,473	△2,800,472	△7.1%	· 직영병원 운영수입
사업수입	122,016	111,675	△10,341	△8.5%	
기타사업수입	122,016	111,675	△10,341	△8.5%	· 제대혈은행 제대혈 공급 수입
징수교부금수입	89,849	95,795	5,946	6.6%	
징수교부금수입	89,849	95,795	5,946	6.6%	·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722,185	641,335	△80,850	△11.2%	
기타이자수입	722,185	641,335	△80,850	△11.2%	· 부서별 기타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	29,374,719	32,207,001	2,832,282	9.6%	
재산매각수입	117,087	111,606	△5,481	△4.7%	
불용물품매각대금	95,375	117,087	△5,481	△5.7%	· 보환연 공용차량, 불용용품 매각대금
보조금반환수입	26,787,352	31,761,977	4,974,625	18.6%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19,160,850	24,983,022	5,822,172	30.4%	· 부서별 자치구 시비보조금 반환수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세 입 내 역
		2024 최종예산	2025 예산(안)	증 감	증감률	
	자체보조금등반환	4,773,627	4,439,777	△333,850	△7.0%	· 부서별 민간보조금 반환수입
	위탁비반환수입	2,852,875	2,339,178	△513,697	△18.0%	· 부서별 민간위탁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2,470,280	333,418	△2,136,862	△93.8%	
	위약금	3,623	2,601	△1,022	△28.2%	· 보환연 계약 지연배상금 등 위약금
	그외수입	2,466,657	330,817	△2,135,840	△86.6%	· 부서별 급여반납금 등 기타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1,514,788	1,537,340	22,552	1.5%	
	지난연도수입	1,514,788	1,537,340	22,552	1.5%	· 부서별 과년도 징수예상액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426	5,261	15	0.3%	
	변상금	5,426	5,261	15	0.3%	
	변상금	5,426	5,261	15	0.3%	· 어린이병원 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보조금	147,527,115	177,400,451	29,873,336	20.2%	
	국고보조금등	147,527,115	177,400,451	29,873,336	20.2%	
	국고보조금등	147,527,115	177,400,451	29,873,336	20.2%	
	국고보조금	25,263,631	37,643,769	12,380,138	49.0%	· 부서별 국고보조금 수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0,234,520	10,678,454	443,934	4.3%	· 부서별 균특보조금 수입
	기금	112,028,964	129,078,228	17,049,264	15.2%	· 부서별 기금보조금 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72,452	2,478,190	△394,262	△13.7%	
	보전수입등	2,872,452	2,478,190	△394,262	△13.7%	
	전년도이월금	813,035	714,856	△98,179	△12.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813,035	714,856	△98,179	△12.1%	·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보조금등반환금	2,059,417	1,763,334	△296,083	△14.4%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59,417	1,763,334	△296,083	△14.4%	· 민간에 교부한 국고보조금 반납금

가. 2025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규모

- 시민건강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6,930억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6,320억원 대비 9.7% 증액된 수준이며, 2024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7,085억 대비 △2.2%가 감액된 수준임.
-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5억원 감소하였으나, 주요 시립병원 예상손실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할 예정(663억원)이므로, 실제 세출 예산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365억원,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 102억원,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98억원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표〉 2025년 시민건강국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최종예산	2025년도 예산(안)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147,527) 708,494	(×117,400) 693,041	(×△30,127) △15,453	△2.2%
일반회계	(×147,527) 708,494	(×117,400) 693,041	(×△30,127) △15,453	△2.4%
행정운영경비	(×398) 10,106	(×398) 10,814	(×-) 708	7.0%
재무활동 (반환금및기타)	17,656	1,683	△15,973	△90.5%
사업비	(×147,130) 680,733	(×177,002) 680,544	(×29,872) △189	△0.0%

나. 최근 5년간 보건분야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 48조 407억원 대비 보건분야 예산 편성 비율은 1.4%로 전체 예산대비 비중은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 하였음.

〈표〉 최근 5년간 서울시 총예산 및 시민건강국(보건분야) 예산편성 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2025년
서울시	40조 1,562억	44조 2,190억	47조 1,905억	45조 7405억	48조 407억
보건분야	5,020억	6,940억	6,250억	6,213억	6,808억
비율	1.3%	1.6%	1.3%	1.4%	1.4%

※ 예산편성액은 회계연도별 당초예산 기준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제외

다. 2025년도 시민건강국 세출예산(안)의 편성 방향

- 시민건강국은 2025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하여 ① 손목닥터9988,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확대 추진, ② 고령 인구구조 변화 대응 어르신 돌봄체계 강화, ③ 전 시민 대상 마음건강돌봄 서비스 접근성 강화, ④ 마약류 중독 예방·홍보 및 치료보호 지원 강화, ⑤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재난·응급의료 지원 계속, ⑥ 저출생 대응을 위한 모자보건서비스 지원 확대, ⑦ 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의료인프라 확대, ⑧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 상시 관리체계 유지를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 밝히고 있으며, 세부 정책 분야별 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음.

〈표〉 2025년도 시민건강국 정책 분야별 예산(안)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주요내용	규모
손목닥터9988,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확대 추진 (332억원)	137만명이 참여하고 있는 손목닥터 9988 사업의 내년도 시민참여 (250만명 예상) 지속 확대	332
고령 인구구조 변화 대응 어르신 돌봄체계 강화 (396억원)	어르신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체계의 중심축인 서울건강장수센터 조성 추진	8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간호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302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AI·IoT기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23
전 시민 대상 마음건강돌봄 서비스 접근성 강화 (1,303억원)	일상 속 마음돌봄을 위한 자치구 심리지원센터 개소 추진	14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회당 8만원, 총 64만원) 마음투자 지원 확대	152
	치매어르신 치료·돌봄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248억원) 및 치매환자 대상 월 3만원(연36만원) 치료비 지원(28억원)	276
마약류 중독 예방·홍보 및 치료보호 지원 강화 (32억원)	마약관리센터 개관(6월)으로 전문적인 마약치료체계 마련	14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5억원) 및 20~30대 중독환자 외래진료를 위한 동행의원 운영(5억원)	10
	대학생 마약예방 위한 또래리더 양성, 동아리 활동지원 (40여개 대학) 등 대시민 홍보를 통한 마약예방활동 강화	7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재난·응급의료 지원 계속 (306억원)	야간·주말 상시 소아진료 가능 병원(30개소) 운영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106
	응급의료센터 및 재난거점병원 지원을 통한 응급의료체계 강화	200
저출생 대응을 위한 모자보건서비스 지원 확대 (929억원)	기존 '난임부부 당' 25회로로 제한됐던 시술을 '출산 당' 25회로 확대(300억원)하고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6억원)	306
	임신 준비 부부를 위한 가임력 검사(35억원)와 올해부터 지원 시작한 35세 이상 임신부 의료비 지원(77억원) 계속 추진	39
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의료인프라 확대 (120억원)	중증 장애인 대상 구강진료 제공을 제공하는 서부장애인 치과병원 신규 개소(68억원) 및 전신마취 등 고난도 치과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지원(5억원)	73
	여성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시설을 갖춘 장애친화 산부인과 3개소 운영 지원 (4억원)	4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 상시 관리체계 유지 (1,323억원)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지방비 분담률 신설에 따른 코로나19 백신 사업비 507억원(국비 234억원) 편성	507
	2세 어린이(18종)와 65세 이상 노인(2종)을 위한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실시	781

라. 부서별 예산(안) 편성 현황

- 시민건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은 7과로 편성되었으며,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이 시민건강국 전체 예산의 24.1%(1,671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건강관리과 22.2%(1,542억원), 정신건강과 18.8%(1,303억원), 공공의료과 10.6%(737억원), 스마트건강과 4.8%(332억원), 보건의료정책과 5.9%(410억원), 식품정책과 3.7%(254억원) 순으로 나타남.
- 그 외 사업소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은평병원 3.0%(208억원), 보건환경연구원 2.8%(197억원), 서북병원 2.5%(171억원), 어린이병원 1.5%(106억원) 순으로 나타남.

〈표〉 2025년 시민건강국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부서별	2024년도	2025년 예산안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총계	708,497 (100%)	693,041 (100%)	△15,456	△2.2%
보건의료정책과	50,342 (7.1%)	40,995 (5.9%)	△9,347	△18.6%
스마트건강과	29,704 (4.2%)	33,222 (4.8%)	3,518	11.8%
건강관리과	155,160 (21.9%)	154,169 (22.2%)	△991	△0.6%
정신건강과	124,821 (17.6%)	130,340 (18.8%)	5,519	4.4%
감염병관리과	148,115 (20.9%)	167,072 (24.1%)	18,957	12.8%
식품정책과	18,695 (2.6%)	25,449 (3.7%)	6,754	36.1%
공공의료과	121,263 (17.1%)	73,672 (10.6%)	△47,591	△39.2%
보건환경연구원	24,184 (3.4%)	19,655 (2.8%)	△4,529	△18.7%

어린이병원	11,027 (1.6%)	10,583 (1.5%)	△444	△4.0%
은평병원	8,410 (1.2%)	20,772 (3.0%)	12,362	147.0%
서북병원	16,776 (2.4%)	17,110 (2.5%)	334	2.0%

※ 시민건강국 조직 일반현황

□ 조 직 : 1국 7과 33팀



- 사 업 소(4) :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 특수법인(1) : 서울의료원
- 위탁병원(8) : 동부·보라매·북부·장애인치과·서남병원, 정신병원 3개소

□ 인 력

- 시 본청 : 정원 189명, 현원 189명

구 분	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	연구직	임기제
계	189 / 189	55 / 58	112 / 113	3 / 1	2 / 2	17 / 15
보건의료정책과	36 / 43	16 / 17	18 / 25	1 / 0	0 / 0	1 / 1
스마트건강과	16 / 13	11 / 13	5 / 0	0 / 0	0 / 0	0 / 0
건강관리과	19 / 19	4 / 3	14 / 15	0 / 0	0 / 0	1 / 1
정신건강과	22 / 22	6 / 6	16 / 16	0 / 0	0 / 0	0 / 0
감염병관리과	38 / 39	4 / 8	21 / 18	0 / 1	2 / 2	11 / 10
식품정책과	40 / 36	6 / 5	28 / 28	2 / 0	0 / 0	4 / 3
공공의료과	18 / 17	8 / 6	10 / 11	0 / 0	0 / 0	0 / 0

- 사업소 및 출연기관 : 정원 3,072명 / 현원 2797명

구 분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서울의료원
정원/현원	298 / 288	298 / 278	221 / 198	295 / 279	1,960 / 1,754

1) 보건의료정책과

- 보건의료정책과의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93억원)한 주요 사유는 ①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조성 △36억원, ② 보건지소 확충 지원 △30억원, ③ 시민 건강동행 △21억원 감액 편성되고,
 - 한편 ① 소아의료체계 구축(국비) 10억원, ② 공공 심야약국 운영 1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2) 스마트건강과

- 스마트건강과의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35억원)한 주요 사유는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운영 51억원 증액되었고,
 - 한편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시스템 구축 운영 △1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3) 건강관리과

- 건강관리과의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10억원)한 주요 사유는 ① 건강도시 서울 기반 구축 △15억원, ②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8억원, ③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18억원 감액 편성되었고,
 - 한편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가임력 검사) 35억원, ②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지원 2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4) 정신건강과

- 정신건강과의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55억원)한 주요 사유는 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66억원, ②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 운영 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한편 ①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14억원, ②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 △1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5) 감염병관리과

- 감염병관리과의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190억원)한 주요 사유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36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한편 국고보조금 반환 △15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6) 식품정책과

- 식품정책과의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68억원)한 주요 사유는 ① 농식품 바우처 지원 66억원, ② 서울시민 저당 식생활 인식 개선(달달 9988) 6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임.

7) 공공의료과

- 공공의료과의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476억원)한 주요 사유는 ①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383억원, ②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174억원, ③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105억원, ④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7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8)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45억원)한 주요 사유는 가락119안전센터-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4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9) 어린이병원

- 어린이병원의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4억 4000만원)한 주요 사유는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운영이 △7억 90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 한편, 어린이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관리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10) 은평병원

- 은평병원의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124억원)한 주요 사유는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리모델링)이 102억원 증액되었고,
 - 한편, ① 은평병원 약무서비스 수준관리 △3억 8000만원, ② 은평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관리 △2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임.

11) 서북병원

- 서북병원의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3억원)한 주요 사유는 ① 서북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4억원, ②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1억원 증액되었고,
 - 한편, 서북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관리 △4억 6000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임.

〈표〉 2025년 시민건강국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2025년도 예산안	예산 사업수					주요 증감사업 현황(5억 이상)
		2024	2025년			전년과 동일사업수	
			사업수 총계	증액 사업수	감액 사업수		
전체	693,041	336	316	137	103	76	
보건의료 정책과	40,995	45	40	15	12	13	○증액 - 소아의료체계 구축(국비) 1,490백만원 - 서울건강장수센터 조성 및 운영 833백만원 -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지원(국비) 560백만원 - 공공 심야약국 운영 1,445백만원 ○감액 -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구축 △903백만원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526백만원
스마트 건강과	33,222	4	3	1	2	-	○증액 -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운영 5,141백만원 ○감액 -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시스템 구축 운영 △1,606백만원
건강 관리과	154,169	55	49	19	19	11	○증액 -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 512백만원 -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전환사업) 1,686백만원 - 남임부부 지원(전환사업) 638백만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가임력 검사) 3,520백만원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지원 2,400백만원 ○감액 - 건강도시 서울 기반 구축 △1,506백만원 - 허귀돌봄자 의료비 지원 △1,767백만원 - 건강증진사업관리 △611백만원
정신 건강과	130,340	42	37	22	7	8	○증액 - 치매치료 및 관리비 지원(전환사업) 565백만원 -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력활동 744백만원 - 청소년 마음돌봄 지원 6,607백만원 -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 운영 899백만원 ○감액 - 치매안심센터 운영(국비) △848백만원 -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1,377백만원
감염병 관리과	167,072	54	51	20	14	17	○증액 -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36,462백만원 ○감액 -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793백만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전환사업) △1,000백만원 -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확충 △676백만원
식품 정책과	25,446	23	25	12	8	5	○증액 - 음식품 바우처 지원 6,622백만원 - 서울시민 저당 식생활 인식 개선(달달 9988) 641백만원
공공 의료과	73,672	21	23	9	12	2	○증액 -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위탁운영 6,786백만원 -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4,008백만원 -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3,260백만원 -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9,844백만원 -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6,200백만원 ○감액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38,314백만원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17,358백만원 - 서울특별시 동남병원 위탁운영 △10,469백만원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6,978백만원 -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분센터 건립 △1,750백만원
보건환경 연구원	19,655	51	47	15	18	14	○감액 - 가립119안전센터-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4,424백만원
어린이 병원	10,583	13	13	9	2	2	○감액 -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운영 △794백만원
은평병원	20,772	13	14	7	4	3	○증액 -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863백만원 -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리모델링) 10,237백만원 -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운영 1,444백만원
서북병원	17,110	15	14	8	5	1	

마. 2025년도 세출예산(안) 기준 100억원 이상 주요 사업

- 2025년도 시민건강국 세출예산안 기준 100억원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업은 총 12개로 시민건강국 총 세출예산 대비 49.8%를 차지함.
- 예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이 11.26%(781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사업이 7.32%(507억원),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사업이 4.42%(306억원),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 9988) 운영’ 4.38%(304억원),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4.35%(302억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전환사업)’ 사업이 4.01%(278억원),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국비)’ 3.54%(245억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사업이 3.19%(221억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2.20%(152억원),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1.81%(126억원), ‘은평병원 현대화(리모델링)’ 사업이 1.71%(119억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1.62%(113억원)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2025년 시민건강국 세출예산(안) 기준 100억원 이상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서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실/국 2025년 총예산안 대비율(%)
1	스마트건강과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운영	25,233	30,374	5,141	4.38
2	건강관리과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30,076	30,164	88	4.35
3	건강관리과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전환사업)	26,120	27,806	1,686	4.01
4	건강관리과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30,010	30,648	638	4.42

5	정신건강과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국비)	25,393	24,545	△848	3.54
6	정신건강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23,496	22,119	△1,377	3.19
7	정신건강과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12,428	12,578	150	1.81
8	정신건강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8,618	15,225	6,607	2.20
9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14,281	50,743	36,462	7.32
10	감염병관리과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국가예방접종 실시	77,619	78,056	437	11.26
11	식품정책과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0,816	11,256	440	1.62
12	은평병원	은평병원 현대화(리모델링)	1,618	11,855	10,237	1.71

바. 2025년도 신규사업 현황

- 2025년도 시민건강국 신규사업은 총 18개 세부사업에 33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025년도 시민건강국 신규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액
보건의료정책과			
1	서울건강장수센터 조성 및 운영	○지원대상 : 전년 시범사업(2개구)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 추가 공모 추진 ○주요내용 : 보건소·지역의료기관 등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노년기 사회관계망 회복과 건강노화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재택치료 등 지원	833
2	응급의료 정보관리자 지원 (국비매칭)	○지원대상 : 권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주요내용 : 권역응급의료센터별 실시간 자원정보의 정확성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 정보관리 인력 지원	(x392) 560
3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확충 (국비매칭)	○지원대상 : 재난거점병원(강동경희대학교병원) ○주요내용 : 화학·방사능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염·제독 시설·장비 구매 지원	(x90) 180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액
4	공공 심야약국 운영 (국비매칭)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공공심야약국 33개소 ○주요내용 : 야간(22시~1시) 운영약국에 대한 운영비 지원 (40,000원/시간, 일 3시간)	(x723) 1,445
건강관리과			
5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 (국비매칭)	○지원대상 :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주요내용 : 전신마취 등을 요구하는 고난도 치과진료 등 장애인에 대한 전문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x256) 512
6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가임력검사) (국비매칭)	○지원대상 : 25~49세 가임기 남녀 ○주요내용 : 여성 13만원(난소기능검사, 부임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 등) 한도 내 실비 지원	(x1,394) 3,520
7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국비매칭)	○지원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자 (향후 법령 제·개정 예정) ○주요내용 : 생식세포(정·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지원	(x130) 433
8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지원 (국비매칭)	○지원대상 : 연간 분만 실적 100건 이상, 신생아집중치료실 15병상 이상 운영중인 의료기관 ○주요내용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한 운영비 지원	(x1,200) 2,400
정신건강과			
9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 운영	○주요내용 :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 시 심리지원사업의 컨트롤 타워로서 광역센터 역할 수행 · 공공 및 민간기관 표준서비스 보급을 위한 선진 프로그램 시범 추진 · 대형재난 등 트라우마에 대한 위기상담 및 회복프로그램 구축	899
10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지원	○지원대상 : 배회나 실종 경험 또는 실종 위험이 있는 등록 치매환자 ○지원사항 : 서울시 거주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 어르신 대상 배회감지기 무상 지원	423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액
감염병관리과			
11	의료관련감염병 관리 (국비매칭)	○지원대상 : 의료기관(중심병원, 중소병원, 요양병원) ○주요내용 : 중심병원(1개)-중소병원(5개)-요양병원(4개) 네트워크를 총 3개 구성하여 민·관 합동 훈련 프로그램 등 실시	(x15) 30
식품정책과			
12	축산물(유통 달걀 등) 안전관리 (국비매칭)	○검사대상 :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및 계란 유통 소매점 등 ○주요내용 : 유통 달걀 수거하여 살모넬라균 오염여부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여부 등 안전성 검사 실시	(x5) 10
13	식문화 개선 지원 (국비매칭)	○지원대상 :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주요내용 :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의 전업시 간판, 메뉴판 교체 등 지원	(x46) 60
14	서울시민 저당 식생활 인식 개선 (덜 달달 9988)	○지원대상 : 서울시민(아동, 청소년, 청년층 집중관리) ○주요내용 · 아동, 청소년 대상 손목닥터9988 연계 덜 달달 원정대 프로그램 운영 · 학교주변, 공공기관 등 대상 건강 식생활 환경 조성	640
15	농식품 바우처 지원 (국비매칭)	○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만 18세 이하 아동 및 임산부 포함 가구 ○주요내용 : 농식품 바우처 지원	(x3,056) 6,622
공공의료과			
16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위탁운영	○위 치 : 강서구 공항대로 489, 5층 및 지하 3·4층 ○주요내용 : 중증 및 저소득 장애인 구강진료와 찾아가는 구강의료 서비스 제공	6,786
17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국비매칭)	○지원대상 : 권역 책임의료기관(서울대병원) ○주요내용 : 수술실·중환자실 인프라 개선 및 중증질환 치료장비 확충 등 지원	(x3,200) 6,200
은평병원			
18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운영	○주요내용 · 마약류 중독자 치료 클리닉 운영 · 병원형 마약류 중독자 재활 클리닉 운영 · 마약류 중독 연구소 운영 등	1,444

3 주요 사업 분석

1.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¹⁾

가. 현황

- 우리아이 안심의원(1차 의료기관)은 평일 야간 19~21시(2시간)까지 진료가 가능한 동네의원 10개소를 선정하여 일별 운영비 40만원(20만원*2시간)을 자치구와 5:5 매칭으로 지원하려는 사업임.
- 2025년도 예산안에는 우리아이 안심의원에 대한 운영비 지급 예산으로 시비 매칭금이 4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관련 예산안 현황 >

민간보조 자치단체보조 사회복지보조 그 외

지원형태	근거	분담비율 또는 금액			심의결과
		국비	시비	구비	
사업비보조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16조		50%	50%	적정(2024. 10. 10.)
운영비보조					

(단위: 천원)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200,000원*247일*8개소 = 395,200천원	○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200,000원*246일*10개소 = 492,000천원
	증감사유	
	○ 우리아이 안심의원 현재 운영기관 수 반영 - 8개소('23.10.)→9개소('23.12.)→10개소('24.1.)	

1)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구축 <사업별설명서 p.77> :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관련

나. 분석의견

첫째, 2024년도 예산안에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비 지원 예산의 자치구 분담 여부 및 계획 등을 제시하지 않아 결국 의회 예산심의 단계에서는 전체 지원 예산 규모 등을 알 수 없었음. 이는 결국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시민건강국은 자치구 분담 여부 및 그 계획 관련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예산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24년도 예산안에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은 아래와 같이 자치구 매칭 없이 시비 100%로 일별 운영비 20만원(10만원*2시간)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여 3억 9,520만원을 편성,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았음.

< 2024년도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관련 예산안 현황 >

민간보조 자치단체보조 사회복지보조 그 외

지원형태	근거	분담비율 또는 금액			심의결과
		국비	시비	구비	
사업비보조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16조		100%		적정(2023. 10. 17.)

(단위: 천원)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200,000원*247일*8개소 = 395,200천원
		증감사유 ○ 우리아이 안심의원(1차의료기관) 사업비 반영 - 야간 휴일 건강지킴이 사업(의료자원과)에서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구축사업(보건의료정책과)으로 이관

- 그런데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²⁾, 우리아이 안심의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예산 규모가 당초 본예산안과 달리 (표 좌측), 자치구와의 5:5 매칭을 통해 2배(기존 시간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 증액된 금액으로 지급(표 우측)된 것으로 확인됨.

< 2024년도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관련 예산안 및 실제 집행 내역 비교 >

구분	(당초) 2024년 본예산안	(변경) 2024년 실제 집행 내역
지원대상	8개소	10개소
일별 운영비 편성 기준	20만원(시간당 10만원*2시간)	40만원(시간당 20만원*2시간)
분담비율	시비 100%	시비 50%, 구비 50%
총액	3억 9,520만원	9억 8,800만원

- 이에, 이러한 서울시-자치구 간의 매칭사업 추진이 언제부터 논의 되었는지 그 시점을 살펴본 결과,

23년 9월 26일 25개 자치구에 발송한 <2024년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사업 수요 조사> 공문에 이미 “2024년에는 시간당 20만원 시·구비 매칭사업(시비50%, 구비50%)으로 진행할 예정”이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음.

또한, 23년 11월 9일에 결재한 ‘2024년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

2) 자료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2024.11.14.)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2-2권] p.841
(요구자료명)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구축 사업 관련 자료

영계획'에는 “기존 시간당 지원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한다는 내용 및 그다음 날인 11월 10일에는 9개 자치구에 보조금 매칭비율(시비 50%, 구비 50%)에 맞게 사업비(총액 7억 9040만원)를 편성하도록 안내하는 ‘시비보조금 가내시 알림 공문’을 발송한 것을 확인함.

- 23. 09. 23. : 2024년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사업 수요 조사 공문 발송(서울특별시→25개 자치구)

※ '24년 지원액(예정) : 시간당 20만원/일(시:구=50:50) *23년 : 시간당 10만원/일

- 23. 11. 01. : 2024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제출(의안번호1467 서울특별시→시의회)
- 23. 11. 09. : 2024년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계획(보건의료정책과-33022)
- 23. 11. 10. : 2024년 우리아이 안심의원 시비보조금 가내시 알림(보건의료정책과-33022)
- 23. 11. 30. : 2024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
- 23. 12. 15.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결

- 이처럼 서울시가 자치구에 <2024년도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사업 수요 조사> 공문을 발송한 일자(23. 09. 23.) 등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이미 서울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23. 11. 01.)하기 전부터 서울시-자치구 간의 매칭 지원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판단됨.
- 그러나 2024년 예산안에는 구비 매칭 계획을 알리지 않아, 의회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는 우리아이 안심의원에 대한 지원 예산 규

모를 알 수 없었고, 이는 결국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향후 서울시는 의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전체 지원 예산 규모 등을 파악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자치구 분담 여부 및 그 비율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둘째,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을 위한 지원 예산 규모의 적절성 검토와 보건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서울시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보건복지부가 2023년 2월에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에 따라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및 야간·휴일 진료 운영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이에 2023년 기준 서울시에 달빛어린이병원은 7개소에 불과하였으나, 2024년 11월 기준 총 14개 기관이 지정·운영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다음 페이지 참조).

<서울시 '우리아이 안심의원' 사업과 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비교>

구분	개소	운영시간	주요역할	25년 예산 (분담비율)	지원기준
우리아이 안심의원	10	평일 19~21시	평일 야간 소아경증환자 일차진료	(시비) 492,000천원 (시비:구비= 5:5)	시간당 20만원
달빛어린이 병원	14	(최대 운영시간) 평일 18시~24시 토일공휴일 9~24시 *기관마다 운영시간 상이	평일 야간 및 휴일 소아경증환자 일차진료	(시비) 1,580,000천원 (국비:시비= 5:5) *운영비 지원 대상 9개소 ³⁾	주41~45시간운영 연 1.6억원 주46~50시간운영 연 1.8억원 주51~55시간운영 연 2.2억원 주56~59시간운영 연 2.8억원 주60시간 이상운영 연 3.6억원

- 따라서 이번 예산안 예비 심사 과정에서는 ①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을 위한 지원 예산 규모의 적절성 검토와 ② 보건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서울시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료 공백 문제 개선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3)운영비 지원 제외(5개소) : 주당 운영시간 지원 기준 미충족

2. 마약류 중독치료 의료기관(동행의원) 운영⁴⁾

가. 현황

- 2025년도 예산안에는 마약류 중독치료 의료기관(동행의원) 운영 예산이 전년과 동일한 1억 2,000만원 편성되었음.

< 2025년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자체) 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민간경상사업보조	○ 민간의료기관 마약류 중독치료 교육 60,000,000원 = 60,000천원	○ 마약류 중독치료 의료기관 교육 60,000,000원 = 60,000천원
	증감사유	
	○ 전년수준 편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민간의료기관 마약류 중독치료 확대 120,000,000원 = 120,000천원	○ 마약류 중독치료 의료기관(동행의원) 운영 80,000원*1,500회 = 120,000천원
	○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22,000원*600개*25개구 = 330,000천원	○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20,000원*100회*25개구 = 50,000천원
	증감사유	
	○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감소	

나. 추진경위

- 서울시에 마약류 사범은 연평균 4,200명을 기록, 그중 청소년 및 20대 마약사범은 1,300명 수준으로 전체 마약사범의 31%를 차지하고 있음(다음 페이지 참조).

4)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자체) <사업별설명서 p.176> : 마약류 중독치료 의료기관(동행의원) 운영 관련

【 마약사범 현황 】

(단위 : 명)

'20년		'21년		'22년		합 계	
전국 (청소년)	서울 (청소년)	전국 (청소년)	서울 (청소년)	전국 (청소년)	서울 (청소년)	전국 (청소년)	서울 (청소년)
18,050 (4,806)	4,015 (1,057)	16,153 (5,527)	4,044 (1,381)	18,395 (6,285)	4,640 (1,571)	52,599 (16,708)	12,699 (4,009)

※ 전국 대비 서울시 마약사범 비율 : '20년 22.2% → '21년 25.0% → '22년 25.2%

- 마약류 중독은 어릴수록 약물 사용 장애가 더 위험하고 치료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경증 중독자에 대한 조기 치료개입 및 지속 치료가 중요함.
- 그러나 중독자가 치료를 받고 싶어도 치료기관 부족으로 인해 초기에 치료받지 못하고⁵⁾ 2~3개월 이상 대기가 필요한 문제가 있었음.
- 이에, 서울시는 초범·경증 마약사범 중 청소년 및 20대를 대상으로 경찰이 치료의뢰서를 발급해 주면, 서울시가 지정한 동네 정신건강의원(정신병원 포함)에서 중독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울형 사범-치료 연계 모델인 「서울형 중독치료 동행의원」 시범사업을 마련함.
- 위와 같은 서울형 중독치료 동행의원은 작년 9월부터 추진되었으나, 경찰의 치료의뢰서가 단 한 건도 발급되지 않는 문제⁶⁾가 있었음.

5) 자료: 김경은, 2023.04.25., “국내 마약중독 24만명… 치료는 연 700명뿐, 마약 전문병원 2곳 그쳐… 의료진·병상도 갈수록 줄어”, 조선일보 보도자료

6) 시민건강국(2023.10.) 중독치료 동행의원 추진계획(개선)

(경찰 입장 변화) 마약사범은 비용이 들지 않고 기간이 짧은 예방교육을 선호하며 치료 강제할 수 없음. 마약류 집중특별단속, 검거 등 업무 증가로 치료, 재활 연계 어려움.

- 이에 서울시는 기존 마약사범에 대한 경찰의 치료의뢰(초기·경증 사범 중 청소년·20대)뿐만 아니라 자의치료자(내원환자 + 중독 연계기관 내원 환자)까지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확대함.
- 현재 서울형 중독치료 동행의원 사업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① 중독치료 동행의원으로 지정된 24개소에서 ‘서울시민 청소년·20대·30대 마약류중독자’를 대상으로 환자별 연간 12회 이내에서 외래진료를 제공한 후, ② 진료 건수에 따른 운영현황을 보건소에 제출하고 있음. 그러면 ③ 자치구에서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운영현황을 확인한 후 ‘의료기관’에 외래진료 건당 8만원의 진료지원금을 지급(시비 100%)하고 있음.

< 중독치료 동행의원 24개소 지정·운영(24년 9월 기준) >

계	강남	광진	구로	금천	도봉	마포	성동	송파	양천	영등포	은평	중구
24	7	1	1	1	2	1	1	3	1	1	3	2

< 중독치료 동행의원 진료지원금 지원 >

○ 지원기준 : 서울시민(주소지)+청소년·20대·30대+마약류중독자(주진단코드) ※ 마약류 중독자(주진단코드) 정신행동장애(F10~F19) 중 F10(알콜 중독), F17(흡연 중독) 제외 - 연 령 : 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지원횟수 : 환자별 연간 12회 이내(24년 진료건)	
○ 지원단가 : 외래진료 건당 80,000원	
○ (지원절차)	
의료 기관	- (대상) 서울시민(주소지) + 청소년·20대·30대 + 마약류 중독자(주진단코드 확인) - (환자 진료, 운영현황 제출) 자치구에 익월 5일까지 전월 운영 현황 제출
↓↑	
자치구	(진료지원금 지원) 의료기관 운영현황 확인 후 의료기관에 진료지원금 지원 (市 제출)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실적 제출
↓↑	
서울시	(예산교부) 자치구 실적별 예산 교부(분기별)

다. 분석의견

첫째, 서울형 중독치료 동행의원은 현재 경찰의 치료 연계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지정된 의료기관을 홍보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러한 현 상황에서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및 20대 마약사범과 아직 검거되지 않은 마약류 중독환자들을 어떻게 이 서울형 중독치료 동행의원 시스템에 유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존 마약사범에 대한 경찰의 치료의뢰뿐만 아니라 자의치료자를 대상자에 포함한 결과, 24년 9월 기준 221명의 마약류중독자가 1,017건의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진료실적에 따르면, 한 명의 마약류 중독환자가 중독치료 동행의원을 일회성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진료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중독치료 의료기관 월별 운영실적 및 기관별 지원규모(24년 1~9월) >

연번	자치구	의료기관명	진료 인원	실적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지원금 (천원)	
1	강남	동행의원 비공개 요청으로 현재연 계기관(보 건소, 중 독관리통 합지원센 터, 검찰, 경찰 등)	99	463	35	29	55	60	54	51	66	53	60	37,040	
2	강남		2	12	1	3	3		3	2				960	
3	강남														
4	강남		1	1					1						80
5	강남		7	20		8					6	2	4	1,600	
6	강남														
7	강남														
8	광진		26	139	27	20	19	19	19	9	7	14	5	11,120	
9	구로														
10	금천		9	63	4	8	11	14	10	7	6	3		5,040	
11	도봉														
12	도봉														
13	마포		3	6		1	1	4							480

연번	자치구	의료기관명	진료 인원	실적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지원금 (천원)	
14	성동	통합 안 내 및 흥 보 협조 체계 구 축	19	97	9	4	9	13	20	6	18	11	7	7,760	
15	송파														
16	송파														
17	송파		12	33		3	4	6	6	6	6	0	2	2,640	
18	양천														
19	영등포														
20	은평														
21	은평		2	11					2	3	2	4			880
22	은평		27	86	3	16	12		15	4	3	8	25		6,880
23	중구		4	33			5	5	11	5	4	3			2,640
24	중구		10	53	2	6	7	6	7	7	7	7	4		4,240
계			221	1,017	81	98	126	127	148	100	125	105	107	81,360	

- 또한, 이들 221명 중 경찰이 치료의뢰서를 발급해 준 마약류 사범은 없었으며(경찰 치료의뢰 0건), 모두 자발적 치료 의사가 있는 자(자의치료자)들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현상을 보면, 분명 혹시 모를 신분 노출의 두려움 때문에 국가사업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환자 부담액 없음)’을 방문하지 않고⁷⁾ 지역 내 일반 의료기관에서 자비를 부담해서라도 중독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마약중독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서울형 중독치료 동행의원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이들에 대한 조기 치료개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현재 참여 의료기관에서는 기존 환자의 이탈 및 지역사회

7) 보건복지부(2024.2.)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마약사범에 대한 기소유예부 검찰의뢰 치료보호와 자의 치료보호가 있으며, 21개 지정 정신의료기관(국립 5개소, 민간 16)에서 입원·외래치료를 통해 사업을 수행함. 치료비의 환자 부담액은 없음(전액 무료),

※ 마약류 중독자 등이 자의 치료보호를 신청할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직업, 사용·중독 마약류, 사용 기간 등을 작성한 후, 서명을 해야 함. 단, 자의 치료보호 의뢰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하고 있음.

평판에 대한 고민으로 동행의원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서울형 중독치료 동행의원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현재 ① 마약사범에 대한 경찰의 치료 연계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② 지정된 의료기관을 홍보하지 못하는 상황임.
- 이러한 현 상황에서,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및 20대 마약사범과 아직 검거되지 않은 마약류 중독환자들을 어떻게 이 서울형 중독치료 동행의원 시스템에 유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발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필요한 제도이지만 서울형 중독치료 동행의원 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둘째, 특정 의료기관 쏠림 현상의 원인 분석과 중독환자 본인에 대한 지원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독치료 동행의원의 마약류 중독자 외래진료 실적을 살펴보면, 구로, 도봉, 양천, 영등포 등에 소재한 11개소 의료기관의 경우, 마약류중독자 치료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며, 강남에 소재한 1개 의료기관이 전체 실적(221명)의 44.8%(99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와 같이, 특정 의료기관에만 마약중독 외래진료가 집중되는 원

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마약류 중독자 외래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의료진 교육, 유관기관 연계 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현재 서울형 중독치료 동행의원은 마약류 중독 진료에 대해 건당 8만원(시비 100%)의 진료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마약류 중독환자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임.
-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중독환자가 서울형 중독치료 동행의원으로 유입되고, 적극적인 치료 참여를 통해 다시 건강한 사회·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치료 효과를 유도하려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중독환자 본인에 대한 지원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단순 의료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마약류 재범률(35%)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시기라 생각됨.

셋째,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중독치료 동행의원에 대하여 진료지원금 지급의 적정성과 허위 청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증 절차'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중독치료 동행의원에 대하여 서울시가 진료지원금을 지원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서울시민(주소지)+청소년·20대·30대+마약류중독자(주진단코드)에 대하여 외래진료 건당

8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음.

- 그런데 현재 중독치료 동행의원이 자치구에 제출하고 있는 ‘2024년도 운영현황 자료’에는 환자등록번호, 출생년도, 진료일자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의료기관이 제출한 2024년도 운영현황 자료만 봐서는 실제 ① 서울시민인지, ②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외래진료 건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중독치료 동행의원 운영현황 양식 >

〈2023년도 운영현황 제출 양식(매월)〉						
①연번	②의료기관명	③진료일자	④성별	⑤출생년도	⑥질병분류 코드	⑦치료의료서 발급기관

※ ⑥ 질병분류코드: 정신건강활성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행동 장애(F10-F19중 F10, F17제외)

〈2024년도 운영현황 제출 양식(매월)〉				
①연번	②환자등록번호	③출생년도	④진료일자	비고
1	0000* (맨 마지막 숫자 가명처리)	0000년	2024-1-2	※ ②와 ③이 동일한 경우 환자등록번호(0000*A, 0000*B) 등 구분하여 작성

- 위 ‘2023년도 운영현황 제출 양식’에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인지 그 여부는 판단할 수 있도록 ‘⑥ 질병분류코드’를 포함하고 있었음.
- 그런데 2024년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자등록번호, 출생년도, 진료일자 등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고 함(집행부 변경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건강정보 중 재식별 될 경우 행위자 처벌과는 무관하게, 정보주체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본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음

- 정신질환 정보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 정보
- 후천성면역결핍증 정보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정보
- 학대 및 낙태 관련 정보(질병분류코드 기준으로 T74, O04 그 외 의료진 판단 활용)

— 특별히 가명처리하여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와 인권을 보호할 추가적인 보호조치* 등의 실시계획을 보고한 뒤 승인을 득한 후 활용할 수 있음

* (예시) 원 개인정보처리자 내 분석 공간 활용 등

※ 처리 목적, 처리자, 연구 방법, 특별한 보호조치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이에 2024년부터는 ‘중독치료 동행의원’에 대한 진료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와 ② 동행의원 운영현황 제출자료 검토 및 ③ 현장방문 실시 등 ‘사후 검증절차’를 통해 의료기관별 지원금 신청 적정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외래 청구 현황자료 >

□ 서울시 자치구 의료기관종별 중독환자 현황(정신과 의원)		
1) 기간: 건강보험 진료일 기준, 2024년1월~2024년 3월 건강보험 심사결정분		
2) 다음의 상항을 주부상항(항방 제외)구분없이 청구한 명세서를 대상으로 작성		
항목	질병코드	명칭
정신활성 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F11	아편유사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F12	카나비노이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F13	진정제 또는 수면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F14	코카인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F15	카페인을 포함한 기타 흥분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F16	환각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F18	취발용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F19	여러 약물 사용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3) 해당 자치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명세서를 대상으로 함	
4) 표시과목: 정신건강의학과		
5) 지역은 요양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산출함		
6) 환자수의 경우 각각의 병주별로 중복을 제거한 값이지만 지역구별로 환자수를 단순합산할 경우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 동일인이 지역(자치구)을 달리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각 자치구별 1명씩 집계됨		
○ 서울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지역구별 중독관련 건강보험 외래 청구현황		
지역	환자수	명세서 청구건수
강남구	135	415
관악구	41	137
구로구	9	29
금천구	21	84
마포구	11	45
성동구	23	77
송파구	14	45
양천구	5	27
은평구	-	-
동구	7	32
계	264	891

○ 그런데 이러한 ‘사후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위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외래 청구 현황자료와 ② 동행의원의 진료지원금 청구실적을 비교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함.

-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외래 청구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위와 같이 자치구별 전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청구한 분기별 마약류 중독치료 청구건수만 확인이 가능할 뿐, 해당 자치구 내 의원별 청구 건수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 즉, 강남구 전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119개소에서 청구한 1분기 건강보험 외래 청구 건수(415건)는 확인이 가능하나, 이 중 강남구에 소재한 중독치료 동행의원 7개소에서 청구한 1분기 건강보험 외래청구 건수는 별도로 확인이 불가함.

- 따라서, 현시점에 중독치료 동행의원이 청구한 진료지원 건수의 적정 유무 및 허위 청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③ 현장 점검을 통해 동행의원이 제출한 운영현황 자료와 실제 진료기록부 등을 비교 검증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현장 점검’과 관련하여, 일부 중독치료 동행의원에서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는 것을 꺼리는 곳도 있다고 함.

- 다만,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은 「의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의료법」 제61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의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 검사는 ① 「의료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 「의료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록열람 등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한지?

2. 회답

「의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 검사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3. 이유

(중략)

먼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각주: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서는 예외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검사할 수 있는 서류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의 개인정보의 종류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은 조사 권한의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을 준수하여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것인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관계 공무원이 검사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의료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 외의 사람에게 함부로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열람·교부 등을 통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환자의 진료관련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 반면(각주: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어 2011. 1. 31. 시행된 「의료법」 개정이유 참조), 같은 법 제61조는 의료관계 사무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시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일정한 관리·감독권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각주: 2007. 12. 5. 의안번호 제2010626호로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2018. 2.) 참조) 의료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행정기관의 고유 직무 수행을 위한 규정인바, 같은 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권한의 범위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환자의 진료관련 개인정보 보호라는 「의료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입법취지가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해석(안건번호 22-0356)

- 이러한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등을 참고하여, 꼭 현장 점검 방식이 아니더라도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중독치료 동행의원에 대하여 진료지원금 지급의 적정성과 허위 청구 여부는 판단할 수 있게 ‘검증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를 통해 서울시의 재정이 더욱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

3.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운영 및 시스템 구축 운영⁸⁾

가. 현 황

-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사업(이하: 손목닥터9988)은 스마트 위치와 손목닥터9988 앱을 활용해 참여자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참여도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임.
- 2025년도 손목닥터9988 예산안은 전년 최종예산(297억원) 대비 35억원이 증액된 332억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손목닥터9988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2024년 최종예산	2025년 예산(안)	증감
손목닥터 9988 5차 연도 사업추진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9988) 운영	○ 건강관리 앱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민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 대 상 :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 지원내용 : 건강앱을 통한 자가건강관리 및 동기부여 인센티브 제공 등 - 참 여 자 : 153만명(24년도) → 250만명(25년도)	25,233	30,374	5,141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9988) 시스템 구축 운영	○ 서울형 헬스케어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서울형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비, 공공 클라우드 사용료 등 편성 ※ 스마트밴드 보급 종료(△25억원)	4,420	2,814	△1,606

8)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운영 <사업별설명서 p.191>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별설명서 p.197>

나. 분석의견

첫째, 손목닥터 9988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규참여자 수’와 ‘기존참여자 수’를 산출하여 이들이 실제 적립 및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해야 하는데, 현시점에서는 서울시 추계에 대한 정확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움.

- 손목닥터9988 사업은 아래와 같이 ③ 누적 참여자(①+②)가 늘어날수록(‘24년 누적 153만명 → ‘25년 누적 250만명) ④ 포인트 지급 예산(‘24년 231억원 → ‘25년 287억원)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임.

<손목닥터 9988 모집인원 및 포인트 지급 예산 현황>

구분	2024년 참여자		→	2025년 참여자 수	
	모집 목표	최대 적립 가능 포인트		모집 목표	최대 적립 가능 포인트
① 신규참여자	108만명	100,000p		143만명	100,000p
② 기존참여자	45만명	70,000p		107만명	70,000p
③ 누적참여자	153만명			250만명	
④ 포인트 예산	231억원			287억원	

- 따라서 동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① ‘신규참여자 수’와 ② ‘기존참여자 수’를 각각 산출하여 이들이 실제로 적립 및 사용할 수 포인트 예산안을 산출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데,
- 서울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현재 시점에서 아래와 같이 내년

도 ① ‘신규참여자 수(143만명)’와 ② ‘기존참여자 수(107만명)’를 각각 산출하여 이들이 실제 적립(신체활동 28%, 81% / 식단 등 20%) 및 사용(60%)할 수 포인트 예산안을 근거로 내년도 예산이 산출되었다고 설명함.

<25년도 손목닥터 9988 사업설명서 포인트 산출내역>

① 1년 차 참여자('24.7.~'25.12. 참여자): 143만명, 18,839백만원

구 분	포인트	적립률	사용률	인 원	예 산
신체활동	73,000P	28%×81%	60%	1,430,000명	= 14,205,391,200
식단 등	27,000P	20%			= 4,633,200,000

※ '25년부터 1년차 참여자, 매일 8,000보 걸기시 200P 지급 : 200P × 365일 = 73,000P

② 1년 이상 참여자('24.6. 이전 참여자): 107만명, 9,930백만원

구 분	포인트	적립률	사용률	인 원	예 산
신체활동	54,750P	28%×81%	60%	1,070,000명	= 7,971,906,600
식단 등	15,250P	20%			= 1,958,100,000

※ 1년 이상 참여자, 매일 8,000보 걸기시 150P 지급 : 150P × 365일 = 54.750P

- ▶ (적립률) '24.7월 기준 신체활동 적립률 28%, 식단·홈트·이벤트 등을 통한 적립률 20%로 추정
- ▶ (조 정) 신체활동(걷기)는 매일 접속시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으로 '24.9월 기준 걷기(8,000보) 완료 당일 포인트 획득·적립 비율 81%
- ▶ (사용률) 적립한 포인트 중 서울페이머니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비율을 60%로 추정 ※ '23년 사용률 76.2%, '24년(10.27 기준) 37.7%

-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에서 제시하고 있는 ① ‘신규참여자 수(143만명)’와 ② ‘기존참여자 수(107만명)’ 추계에 대한 정확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움.

- (2024년 신규참여자 수 추계 부정확성) 왜냐하면, 올해 서울시는 손목닥터9988 사업 신규참여자 모집목표를 아래와 같이 두 번 수정하고도 ‘신규참여자 수’ 추계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내년도 ‘참여자의 수 추계’ 역시 그 정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 서울시는 ① 당초 24년도 예산 편성 시, 올해 신규참여자 모집 목표를 25만명으로 계획하였으나, ② 연초(2월) 신규참여자 모집 목표를 60만명으로 한 차례 변경함.
- 이러한 모집 목표 변경에도, ③ 4월 말 기준으로 신규참여자 모집 목표(15만명)를 초과 달성(37만명)하였으며, 연말까지 누적 신규참여자 수가 108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난 6월 추경예산으로 113억원(추가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함.
- 그런데 ④ 추경 이후 10월 말 현재 신규가입자 모집 현황을 살펴보면, 추경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누적 가입자 수(104.5만명)보다 11.5만명 미달한 93만명이 모집됨. 이에, 올해 서울시의 ‘신규가입자 수’ 추계가 맞으려면, 남은 2개월 동안 15만명 모집을 달성해야만 하는 상황임.

< 손목닥터9988 사업 24년도 월별 신규가입자 모집목표 및 실제 모집현황 >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① 당초	월별 모집 목표 '없음'										25만명
② 변경	10만	5만	4만	10만	5만	10만	4만	5만	4만	3만	60만명
③ 추경	22만	15만	15.5만	13.5만	12만	9만	7.5만	6만	4.5만	3만	108만명
누적 104.5만명 예측											
④ 현재	22만	15만	14.5만	10.6만	7.6만	6.2만	6.6만	10만	-	-	-
누적 93만명 모집											

- (2025년 신규가입자 포인트 총 적립 예상액 추계 부정확성) 또한 신규가입자의 경우, 가입 시점(월)에 따라 연말까지 실제 적립 및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예산액(1년치 최대 적립 가능 포인트 = 100,000p)이 달라지기 마련인데,
- 이러한 가입 시점(월)에 따라 참여자의 적립 및 사용 가능한 포인트 예산액 추계를 차등 적용하지 않고, 신규 참여자 143만명에게 필요한 포인트 예산액을 모두 일률적인 포인트 적립률(신체활동 28%, 81% / 식단 등 20%)과 사용률(60%)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도, 본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 하겠음.

< 2025년도 손목닥터9988 예산안에 신규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예산 >

○ 신규 참여자 인센티브 예산안 = 188억 3900만원

예산안 산출근거

(신규참여-신체활동) $73,000\text{원} \times 1,430,000\text{명} \times 28\% \times 81\% \times 60\% = 14,205,392\text{천원}$

(신규참여-기타) $27,000\text{원} \times 1,430,000\text{명} \times 20\% \times 60\% = 4,633,200\text{천원}$

- 따라서 이번 예산안 예비 심사 과정에서는 '25년도 신규가입자 수 (143만명) 추계'와 '포인트 예산 산출(188억원)'에 대한 정확성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둘째, 손목닥터 9988 사업은 최종 목표가 서울시민 330만명 ‘모집’이 아니라 스마트 워치와 9988 앱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개선’ 시키는 것임. 따라서 본 사업 목표에 맞는 성과를 측정 및 평가하기 위해서는 건강 관련 결과지표(outcome)를 설정하고 매년 계획된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2025년도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서울형 헬스케어 참여율(%)’, ‘서울형 헬스케어 참여인원(만명)’ 2가지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성과지표를 활용하여서는 본 사업에 대한 효과와 사업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 2025년도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25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정성	성격	
시민건강국 스마트 건강과	생활밀착 건강관리체계 구축	서울형 헬스케어 참여율 (%)	75	정량	산출	33,188
		서울형 헬스케어 참여인원(만명)	190	정량	산출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에 최종 목표⁹⁾를 고려하여 ‘건강행태

9) 자료 : 제32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2024년 6월 14일(금))

○ 위원 : 이 사업의 목표, 100만 명 돌파 330만 명 돌파가 목적입니까?

○ 시민건강국 :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양적인 거는 저희가 성과를 측정하는 수단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개선율’, ‘신체활동 실천율’ 등 참여자의 건강 관련 결과지표 (outcome)로 설정하고, 매년 계획된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 환류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재정 투입 필요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참고로 본 사업은 2023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서도 “성과지표를 사업 참여자 수, 참여자들이 모바일 앱과 연동한 비율 2가지로 측정하고 있으나 성과목표인 건강활동 증대 관련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외부 전문가 의견이 있었음¹⁰⁾.
- 한편, 본 사업에 대한 2024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예산담당관)’ 결과를 살펴보면, 5단계 등급 중에 손목닥터9988 운영은 ‘보통’, 손목닥터9988 시스템 구축 운영은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 >

- (개념)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내부의 사업수행 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확인 점검한 평가결과를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임
- (2024년 사후 평가대상) ‘23회계연도 5억원 이상 투자·경상사업 및 행사성 사업, 기타 집행률 부진 사업 등
- (사후 평가절차) 자체평가(실·본부·국) → 외부평가 및 결과확정(예산담당관)
- (결과 산출) 5단계로 등급화(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용할 수 있는 건강통합플랫폼으로 발전시켜서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 할 수 있는 도구로 정착시키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 위원 :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민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하게 사는 거잖아요?
- 시민건강국 : 거기에 기여하는 게 목표입니다.

10) 자료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2024.11.14.)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2-2권] p.1232 (요구자료명) 시민건강국 사업별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최근 3년간)

< 2024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산출 >

평가등급	점수	사업비율(사업 수 기준)	예산상 조치
매우 우수	90점 이상	20% 이내	원칙상 예산 증액 또는 유지
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보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	원칙상 예산 유지 또는 제도개선 권고
미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15% 이상	원칙상 예산 10% 이상 삭감 재평가 후 개선 없을시 사업 일몰
매우 미흡	60점 미만		

* 자료: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2024. 3.) 2024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

< 2024년 주요 재정사업(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운영) 평가결과 >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 배점	평가 결과	
				자체	외부
계획 (3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1-1. 사업목적과 사업대상이 명확한가?	10점 정성	7	7
		1-2. 사업계획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정한가?	10점 정량	7	6
		1-3. 달성(성과)목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10점 정성	6	6
		소 계	30	20	19
관리 (40점)	사업관리의 적정성 (40)	2-1. 사업추진상황의 관리를 위해 계획서상에 따라 제도 구축 등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가?	10점 정량/정성	7	6
		2-2. 사업 추진상황(모니터링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10점 정성	6	6
		2-3.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0점 정성	9	9
		2-4.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점 정성	6	7
		소 계	40	28	28
성과 (30점)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 (30)	3-1. 사업의 수행을 통해 계획된 달성(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10점 정량	6	6
		3-2. 사업의 성과달성 정도가 우수하였는가?	10점 정성	6	6
		3-3. 사업 종료 후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졌는가?	5점 정성	4	4
		3-4. 평가결과의 환류 정도: 사업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수립 등 환류가 이루어졌는가?	5점 정량	5	5
		소 계	30	21	21
계		100		69	68

- 이러한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보면, 사업관리 주체인 시민건강국 내부에서도 스스로 본 사업을 ‘미흡’하다고 자체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¹¹⁾.

4.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¹²⁾

가. 현황

-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예산이 전년과 동일한 1억 150만원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과목구분	2024년 최종예산	2025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1,500천원	○ 사업안내 홍보물 제작 150원*10,000매 = 1,500천원
	증감사유	
	○ 사업안내 홍보물 제작비 편성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100,000천원	○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1,000,000원*100명 = 100,000천원
	증감사유	
	○ 전년도 최종예산(2024년 추경) 수준 편성	

나. 추진경위

-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은 이전에 영구피임 시술(정관·난관 절제술)을 받은 자가 다시 임신을 희망하여 정·난관 복원 수술을 받게 될 경우, 서울시가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¹³⁾해 주는

11)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그간 손목닥터 9988 사업에 대한 '효과성' 과 '비용-편익'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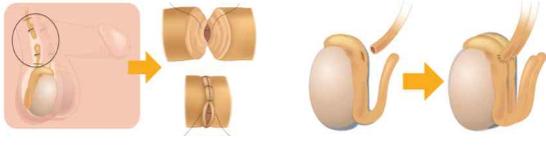
12)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 <사업별설명서 p.370>

13) (비용 부담) 2004. 7월부터 정관 및 난관의 복원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본인부담금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40~300만원 비용은 개인이 부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6호(행위) 영구피임 시술(난관·정관 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자가 자녀를 낳고자 하여 실시하는 정·난관 복원 수술은 요양급여 대상임. (2004. 7. 1 시행)

사업임.

< 정·난관 복원 수술 >

구 분	정관 복원 수술	난관 복원 수술
이미지	 <정관정관문합술> <부고환정관문합술>	
방법	◦ 안쪽의 점막과 바깥쪽의 근육층을 각각 연결	◦ 난관의 막힌 부분을 잘라내고 이어줌
종류	◦ 정관정관문합술(R3893) ◦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 정관복원술(양측)(R3895)	◦ 난관난관문합술(R4411) ◦ 자궁난관이식술(R4412)
본인부담금비용	◦ 40~80만원 ※ 23년 종합병원 일반환자 기준 약 74만원	◦ 200~300만원
수술	◦ 임신을 위해 자른 정관을 연결하고자 할 경우	◦ 난관 수술한 사람이 임신을 원할 경우 ◦ 난관이 기형으로 막힌 경우 ◦ 난관 주위 복강에 유착 증상이 있는 경우

-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1억 150만원을 편성하여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음.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01,500	0	101,500
사무관리비	1,500	0	1,5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	0	100,000

- 당시 각종 언론에서는 아래와 같이 서울시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

< 서울시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관련 여론 >

발표기관	보도일시	보도제목
서울신문	2024.05.30.	"뭍은 거 푼다고 애 낳겠나"...정관 복원 지원금에 쏟아지는 비판
한국일보	2024.05.30.	저출생이 정자 문제?... 혈세 들여 정자 분석·정관 복원 지원한다니 '분노'
쿠키뉴스	2024.06.04.	정·난관 복원 지원 지자체...저출생 효과는 글썄

- 또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에 대한 실효성 문제, 그리고 추경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음¹⁴⁾.
- 그러나 서울시는 정·난관을 복원하려는 시민들의 경우, 자녀 출산 의지가 100% 있는 분들이고, 매년 정·난관을 복원하는 시민이 110명 정도 있으므로,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연내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함.

14) 자료 : 제32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2024년 6월 14일(금))

- 위원 : 이 사업이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실효성에 대한 검증, 이렇게 매년 한 100명 정도 하면 누적 인원이 5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정관 복원 수술인 경우에 오백 분 중에서 실제로 임신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을까요?
- 위원 : 저희 추경예산에서 정·난관 복원 시술비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본 위원도 5분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한 해 100~110명 정도 시술을 받는다고 했는데 성공률이 어떻게 되죠, 임신 성공률 평균적으로?
- 위원 :저는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올해 쓸 수 있을까요? 올해 돈 쓸 수 있나요, 이거 추경에 올리셨는데?

다. 분석의견

첫째,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한 그간 추진 실적 부진 문제,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목표 달성률 25%)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0월 4일 기준으로 지원인원은 총 2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당초 서울시가 목표했던 지원인원(100명) 대비 매우 저조한 실적임(다음 페이지 참조).
- (임신 성공 가능성) 또한 현재까지 정관복원 수술은 정관수술(영구 피임) 후 3년 이내 수술해야 임신 성공률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임신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¹⁵⁾.

< 정관 복원 수술의 임신 성공 가능성 >

정관 수술 기간	정관 개통률(%)	임신 성공률
3년 이하	97%	76%
3~8년	88%	53%
9~14년	79%	44%
15년 이상	71%	30%

* 자료: 서울특별시(2023. 4.)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서(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

- 즉 정관복원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다 임신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이전에 정관수술을 받은 시기에 따라 임신 성공률(3년 이내 임신 성공률 75% → 15년 이상 임신 성공률 30%)이 달라짐.

15) 자료 : 서울특별시(2023. 4.)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서(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

-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정관복원 시술비를 지원받은 인원(25명) 중에는 2003년(정관수술 기간 20년 이상), 2005년(정관수술 기간 15년 이상)에 정관수술(영구피임)을 받은 50대 이상의 남성도 포함되어 있음.
- 향후, 아래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추적관찰을 통해 임신 성공률을 살펴보고,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서울시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현황 (24년 10월 4일 기준 25명)>

연번	신청일	이름	성별	연령	복원수술종류	지원금액	영구피임수술연도	임신성공여부
1	2024.07.19.	박xx	남	35	정관복원수술	825,610	2019	시기미도래
2	2024.07.19.	김xx	남	31	정관복원수술	768,020	2023	시기미도래
3	2024.07.25.	김xx	남	43	정관복원수술	796,540	2018	시기미도래
4	2024.07.31.	이xx	남	33	정관복원수술	1,000,000	2022	시기미도래
5	2024.08.14.	안xx	남	48	정관복원수술	1,000,000	2016	시기미도래
6	2024.08.18.	이xx	남	32	정관복원수술	1,000,000	2020	시기미도래
7	2024.08.22.	임xx	남	38	정관복원수술	1,000,000	2021	시기미도래
8	2024.08.23.	채xx	남	27	정관복원수술	1,000,000	2022	시기미도래
9	2024.08.25.	최xx	남	37	정관복원수술	910,400	2019	시기미도래
10	2024.08.26.	박xx	남	39	정관복원수술	1,000,000	2021	시기미도래
11	2024.08.26.	한xx	남	41	정관복원수술	1,000,000	2000	시기미도래
12	2024.08.26.	박xx	남	39	정관복원수술	1,000,000	2019	시기미도래
13	2024.09.03	박xx	남	42	정관복원수술	1,000,000	2019	시기미도래
14	2024.09.08	조xx	남	39	정관복원수술	1,000,000	2018	시기미도래
15	2024.09.10	권xx	남	34	정관복원수술	1,000,000	2019	시기미도래
16	2024.09.10	이xx	남	39	정관복원수술	1,000,000	2019	시기미도래
17	2024.09.11	민xx	남	43	정관복원수술	1,000,000	2017	시기미도래
18	2024.09.21	김xx	남	34	정관복원수술	1,000,000	2022	시기미도래
19	2024.09.23	이xx	남	26	정관복원수술	1,000,000	2020	시기미도래
20	2024.09.24	심xx	남	51	정관복원수술	1,000,000	2003	시기미도래
21	2024.10.02	정xx	남	44	정관복원수술	1,000,000	2022	시기미도래
22	2024.10.02	박xx	남	53	정관복원수술	989,190	2005	시기미도래
23	2024.10.02	김xx	남	37	정관복원수술	1,000,000	2022	시기미도래
24	2024.10.04	황xx	남	40	정관복원수술	1,000,000	2023	시기미도래
25	2024.10.04	김xx	남	29	정관복원수술	568,840	2022	시기미도래

둘째,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은 예산안 편성 전 법령에 따른 사전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여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 있음.

-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의 추진경과(연혁)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작년 11월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한 후 올해 5월 21일 지원계획(안)을 수립하였음.
 - 23. 11. 02.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통보(보건복지부→市)
 - 24. 05. 21. :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계획(안)(스마트건강과-9263)
 - 24. 07. 09. :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수정) 계획(건강관리과-861)
- 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23. 11. 02.)'와 관련하여, 당초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서」에 따르면, 본 사업의 신청, 조사, 결정, 지급, 사후관리 등의 '전달체계'는 모두 25개 보건소를 통해 수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함.
- 하지만 올 7월 서울시가 수정한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 계획에 따르면, “지원이행 절차(접수·지급결정·지급)”를 기존 자치구에서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함.
- 이러한 '변경'에 대하여,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 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

도의 전달체계 등이 변경되는 경우¹⁶⁾, 매년 6월 30일까지 협의 요청서(변경)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하도록 의무화¹⁷⁾하고 있음.

- 하지만 서울시는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전달체계 등이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음.
-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¹⁸⁾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6)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생략>.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년 4월 30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신설”은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15. 11. 30., 2021. 12. 7.>

1. 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
2. 국고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
3. 그 밖에 급여 내용, 전달체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 ⑧ <생략>.

17)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18) 자료 : 행정안전부(2024. 7.)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350

아.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예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신설·변경할경우복지부장관과사전협의

- 이번 25년도 서울시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예산안은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전절차인 변경 협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한 사안이므로 향후 시민건강국은 법령과 관련된 사전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여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5. 서울시(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¹⁹⁾

가. 현황

- ‘서울시(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민간 위탁’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주요 사업 목적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 질환 예방·치료·중독관리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시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그리고 동 사무의 2025년 예산(안)은 약 4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시비는 약 41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고, 국비는 1천2백만원²⁰⁾이 편성되었음. 그리고 특히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약 40억원²¹⁾임.

구 분	2024년		2025예산(안) (B)	증감 (B-A)	(B-A)*100/ 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12,928) 4,070,670	(x12,928) 4,070,670	(x12,932) 4,195,228	(x4) 124,558	(x-) 3
사무관리비	(x-) 206,770	(x-) 206,770	(x-) 206,770	(x-) 0	(x-) 0
공공운영비	(x-) 400	(x-) 400	(x-) 400	(x-) 0	(x-)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5,000	(x-) 5,000	(x-) 5,000	(x-) 0	(x-) 0
민간위탁금	(x12,928) 3,858,500	(x12,928) 3,858,500	(x12,932) 3,983,058	(x4) 124,558	(x-) 3

19) 25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p.434)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관련

20) 정신응급대응 관련 ‘차량운영비’ 국비 지원

21) 25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p.455) 상 “정신건강증진시설 인력화충” 사업에 국:시비 매칭으로 편성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원 약 24억은 별도 사업으로 계상됨.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시설 지도점검 등 41,770,000원 = 41,770천원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시설 지도점검 등 41,770,000원 = 41,770천원
	(건물 임차료 165,000,000원 = 165,000천원	(건물 임차료 165,000,000원 = 165,000천원
	증감사유	
	○ 전년수준 반영	
공공운영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손해보험료 400,000원*1년 = 400천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손해보험료 400,000원*1년 = 400천원
	증감사유	
	○ 전년수준 반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신건강 업무추진 5,000,000원 = 5,000천원	(정신건강 업무추진 5,000,000원 = 5,000천원
	증감사유	
	○ 전년수준 반영	
민간위탁금	(인건비 1,979,777,000원 = 1,979,777천원	(인건비 2,013,407,000원 = 2,013,407천원
	(사업비 890,300,000원 = 890,300천원	(사업비 889,502,000원 = 889,502천원
	(운영비 471,550,000원 = 471,550천원	(운영비 486,860,000원 = 486,860천원
	(국비인력 인건비 지원 491,017,000원 = 491,017천원	(국비인력 인건비 지원 567,425,000원 = 567,425천원
	(응급개입팀 운영비 25,856,000원 = 25,856천원	(응급개입팀 운영비 25,864,000원 = 25,864천원
	증감사유	
	○ 2025년도 국비 가내시 결과 반영(보건복지부, '25. 10. 7.) ○ 전년도 대비 인건비 3% 증액 반영	

나. 분석의견

첫째, 동 사무의 성과를 내·외부에서 평가한 “민간 위탁 종합성과평가(’24.4월)” 및 “2024년 주요 재정 사업 평가”에서 동 사무가 “75점

미만의 필요적 재계약 배제 점수”인 “73점”과 “원칙적으로 예산 10% 이상 삭감 적용” 대상인 “미흡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동 사무에 대한 가장 최근의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점수는 73.44 점으로서,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상 필요적 재계약 배제 사유인 75점²²⁾ 미만에 해당함.
- 그리고 이는 '21년 동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점수가 84.2점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오히려 ‘과거’보다 ‘종합성과평가’ 점수가 약 10점 가량 하락한 것이며, 그 주된 점수 하락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운영상 범규 및 규정(지침)’ 미준수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협약사항 위반 2건 (-4점) : 1)사업계획서 변경 시 ‘서울시’의 서면 승인 절차 미이행, 2)직원 채용 관련 공고 기간 미달
 -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1건 (-2점) : 1)임산부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 감사 지적사항 발견 3건 (-0.3점) : 1)수탁 기관 및 사무 관련 사무 편람서의 승인을 얻어 비치 권고, 2)차년도 사업계획 승인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시의 승인 권고, 3)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 사본 비치 요청
- 아울러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²³⁾에서 “주요 재정사업 평가 내실화를 통한 사업 성과를 제고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한 “2024년 주요

2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58)에 따르면,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75점 미만인 경우는 필요적으로 ‘재계약’이 배제됨. 따라서, 평가점수 75점은 ‘실제 재계약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민간위탁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주요한 ‘기준 점수’가 됨.

23) 예산담당관-3242 (24.3.11.)

재정사업 평가”에서 동 사무는 “원칙적으로 예산 10% 이상 삭감 적용” 대상인 “미흡 등급”을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에서 모두 받았음.

- 그리고 이에 따라, 동 사무는 원칙적으로 “예산이 10% 이상 삭감”이 되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예산 삭감 및 미반영이 불가능한 사무인 경우” 또는 “예산 삭감 보다 사업 개선이 더 효율적인 사업 등”은 성과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삭감” 없이 관리 할 수 있음.
- 이에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는 동 사무에 대한 “미흡 등급”결정에 대해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10% 이상 예산 삭감”이 아닌 “성과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음.
- 그리고 ‘성과관리 계획’에서 “성과부진”의 주된 사유로 “급변하는 정신 건강 정책 환경”에 따른 “새로운 역할과 기능 조정 및 대응 미흡”과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도전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성과 달성의 어려움”을 들고 있음.
- 아울러, ‘성과관리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으로 ① 정신건강 관련 영역 전문가 대상 조사 연구를 통해 센터의 방향성 및 지표 설정 예정 ② 반기별 모니터링 및 외부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개선방향 도출 ③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시범사업의 전국 확산 추진 ④ 서울연구원 용역(’25. 3~’25. 12)을 통한 조직 재설계 및 인력구조 개선(안) 등의 도출을 제시하였음.

성과관리 개선계획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성과 부진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환경적 요인) 정신질환자 범죄, 마약 등 사회적 이슈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임. 다만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과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에서의 조정이 다소 부족하였음 ○ (성과목표)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S-DPAT(서울시 재난심리지원) 운영 지원 등 전국 최초 신규사업 기획 및 시범운영에 따른 목표치 도전적 설정으로 인한 성과 달성 어려움 있었음
성과관리 개선대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방향성 재설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주요 대상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 관련 시설을 비롯한 정신건강 관련 영역 전문가 대상 조사·연구를 통해, 향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행해야 할 핵심 역할 및 기능 중심으로 사업방향성 및 지표설정 예정 - 정신건강사업 요구도 조사 계획 및 전문가 자문회의('24.6 ~ '24.12.) ○ (모니터링 강화) 반기별 모니터링 등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보완 및 개선점 도출 → 운영위원회 등 진행 중인 외부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개선방안 타당성 검토 및 환류 ○ (성과확산 노력) 「국가 정신건강 혁신방안」 내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모델 반영 등 서울시 시범사업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향후 성과 확산을 위해 내·외부 협력 강화 노력 예정 ○ (조직진단)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 대응을 위한 센터의 조직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합리적인 조직운동을 위해 센터의 팀별 기능과 역할을 반영한 조직 재설계 및 인력구조개선(안) 도출 등 조직 개선 방안 수립 - 서울연구원 용역('25.3 ~ '25.12.)

- 우선, 정신건강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부진”의 사유는 그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왜냐하면 ‘정신질환’ 문제는 비교적 최근어야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대두된 문제이며, 특히 “이상 동기 범죄 발생 및 마약의 전국적 확산”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파장”을 주는 형태로 발생했기 때문임.

- 따라서, 이러한 급격한 “정신건강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해 동 센터의 “적응과 조정”이 쉽지 않았던 것은 성과 부진 결과 있어 참작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동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신응급합동대응’ 업무 역시 ‘현재’ ‘자·타해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요원들이 긴급히 파견되어 대응해야 하는 업무이기에 ‘사업 자체’ 난이도가 높은 업무임.
- 따라서, ‘업무 자체’의 난이도가 높고 국가 또는 타 지자체를 통해 참고할 만한 사례가 부족하여 ‘목표 달성’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이유 역시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 다만, 이러한 성과 부진 사유의 타당성과 별개로 현재 정신건강과가 제시하고 있는 ‘개선 대책 4가지’는 다소 그 계획과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여 향후 세부적인 보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 중 특히, “조직진단 및 조직 재설계”의 경우 앞서 언급한 “민간 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75점 미만이 나오게 된 주된 이유인 ‘센터 운영상의 미흡, 직장내 괴롭힘 발생, 협약사항 위반’과 연관되므로 더욱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아울러 동 센터는 24년 3월 (전임) 센터장 사임 이후 현재까지도 ‘센터장’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더욱 센터의 운영과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이러한 ‘센터 내 조직 문제’ 사항은 이미 24년 9월 동 사무의 수탁기관인 서울의료원이 진행한 내부 감사²⁴⁾결과에서도 기 권

고한 바 있던 사항임.

- [감사권고사항]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충처리위원회로 접수되는 고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조직문화 진단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조치할 것”

둘째,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들이 동센터의 예산(안)에 대해 지적한 사항 (강사료 및 다과비 예산 과다 계상, 유사 중복 사업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동 사무의 ‘민간 위탁’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인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동 센터에 대해 ‘평가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 (2024. 5월)

그다음에 역시 예산(안) 관련된 부분인데요. 유달리 보니까 **강사료, 관련자 양성회의 다과비, 이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약간 **이름으로는 유사해 보이는 사업들이 곳곳에** 있거든요.[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운영, 동료지원가 역량강화 교육]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동료지원가 자조모임, 동료지원가 네트워크간담회 등등] 이렇게 자주 만나기만 하지 ‘그 사업은 언제 하지?’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주로 먹고 마시는 게 조금 과도하게 많아**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뭔지.

그다음에 인건비 설명해 주셨는데, **직접 고객 대상으로 사업하시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작아** 보여가지고 그런 부분을 혹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습니다.

- 그리고 이에 실제 동 센터의 2025년 예산(안) 세부 내역(계약심사과 원가계산서 기준)을 분석하여 보면, 평가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강사료’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세부사업’ 역시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운영’ ‘동료지원가 역량강화 교육’ 및 ‘동료지원가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워크숍’ 등으로 유사·중복된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2025년 예산(안)〉

- 아울러, ‘민간위탁 사무’ 자체가 ‘공공영역’이 할 수 없거나 ‘공공영역’ 보다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전문성 있는 민간 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무임을 고려할 때,

연번	사업 세부 내역	금액
1	정신재활시설 지원 교육 (강사비)	3,600천원
2	정신건강 관련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강사비)	3,500천원
3	실무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강사비)	480천원
4	지역정신건강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강사비)	2,880천원
5	신규입사자 역량강화 교육 (강사비)	4,800천원
6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강사비)	600천원
7	아동청소년 사례관리 실무자 교육 (강사비)	1,920천원
8	정신건강 인식개선 활성화 언론관리 간담회 (강사비)	1,920천원
9	주거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강사비)	3,360천원
10	서울시 주거서비스 홍보 및 사업설명회 (강사비)	1,020천원
11	동료지원가 양성 과정 운영 (강사비)	10,400천원
12	동료지원가 역량 강화 교육 (강사비)	2,520천원
13	정신질환 고령화 서비스 실무자 역량강화 지원 (강사비)	1,440천원
14	당사자 가족지원가 기본교육 (강사비)	4,280천원
15	당사자 가족지원가 심화교육 (강사비)	2,320천원
16	당사자 가족 리더 역량강화 (강사비)	1,440천원
17	마약류 중독 조기선별 지원 (강사비)	6,200천원

연번	사업 세부 내역	금액
18	마약류 중독 상담가 양성 (강사비)	7,160천원
19	회복자상담가 양성 교육 (강사비)	18,270천원
20	회복자상담가 지원 보수교육 (강사비)	2,880천원
21	중독사업 실무자 지원 교육 (강사비)	1,440천원
22	재난심리 대응인력 역량강화 초중급 과정 및 소진관리 (강사비)	6,240천원
23	정신응급 심포지엄 (강사비)	360천원
24	정신응급대응 실무자 교육 (강사비)	2,880천원
25	청년 정신질환 조기개입 (치료준비, 치료중단, 우울불안, 양극성)(강사비)	4,110천원
26	청년마음건강센터 성과보고회 (강사비)	2,160천원
27	정신건강 연구 심포지엄 (강사비)	720천원
총계		98,900천원

- 그리고 동 사무 민간 위탁금에서 ‘센터 내 직원들’의 ‘인건비 비중25)’이 상당히 높음을 볼 때, ‘마약류 교육’ 등과 같이 ‘정신건강 업무’ 내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 등을 제외한 나머지의 통상적인 ‘정신건강사무’ 까지도 ‘센터 내부 인력’ 활용이 아닌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동 예산(안)의 사업비 세부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주로 ‘회의 및 간담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모든 ‘회의 및 간담회’ 마다 ‘다과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다과비 항목 (총 90건, 약 27,030천원 계상)

25) 동 세부 사업 민간 위탁금 약 39억 中 약 26억 / 전체 동 센터 예산 (국비 포함) 약 63억 中 약 45억

- 물론 여러 회의 및 간담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다과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동 사무가 비록 민간위탁 사무이지만, 「24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p.250)을 참조하여 1인당 약 4,000원의 단가로 계산한 것 역시 통상적인 범주 안의 ‘1인당 단가 산정’ 판단됨.
- 그리고 ‘정신건강 관련 네트워킹과 협력체계 구축’을 하나의 사업 목표로 하고 있는 동 사무의 특성상 ‘다과비’가 완전히 불필요한 예산은 아니라고 사료됨.
-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비’와 ‘회의비’가 이미 계상되어 있는 ‘회의들’까지도 ‘다과비’를 별도로 계상한 경우가 존재하며, 아울러 ‘사전 준비적 성격’의 ‘사전회의’에 ‘다과비’를 편성한 후 실제 ‘본회의’에 다시 ‘다과비’를 또 다시 편성한 사례들을 검토할 때,
- 다과비가 타 민간위탁기관 대비 과도하게 편성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실제 동 센터의 설립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교육 자료 및 매뉴얼 제작, 콘텐츠 제작 및 개발, 데이터 분석 및 연구” 등의 ‘사무’로의 ‘다과비’ 예산조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6. (출연 또는 민간위탁) 시립병원 4개소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예산 미편성 관련²⁶⁾

가. 현황

-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시립병원은 총 12개소이며, 세부적으로 ① 직영병원이 3곳(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② 출연기관이 1곳(서울의료원), ③ 민간위탁 병원이 8곳(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 정신병원) 임.
- 그 중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총 4개소의 2025년 예산(안)에서 매년 편성 되오던 ‘공공의료 손실보전금’이 미편성 되었음.

구분		24년 예산 (단위: 천원)					25년 예산(안) (단위: 천원)			
		본예산		추경예산	최종예산		재난관리 기금 ²⁷⁾	본예산		재난관리 기금
서울 의료원	전체	16,283,681	100%	22,642,000	38,925,681	100%		6,147,000	611,481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14,638,082	89.9%	22,642,000	37,280,082	95.8%	미편성		0%	
보라매 병원	전체	13,909,554	100%	11,200,000	25,109,554	100%	9,562,000	7,751,830	100%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7,518,219	54.1%	11,200,000	18,718,219	74.5%		미편성	0%	
동부 병원	전체	12,918,599	100%	-	12,918,599	100%	-	2,449,805	100%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10,680,012	82.7%	-	10,680,012	82.7%		미편성	0%	
북부 병원	전체	8,002,223	100%	-	8,002,223	100%	-	8,183,049	100%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6,189,683	77.3%	-	6,189,683	77.3%		6,824,820	83.4%	
서남 병원	전체	11,458,272	100%	140,000 ²⁹⁾	11,598,272	100%	-	4,620,570	100%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8,132,418	71.0%	-	8,132,418	70.1%		미편성	0%	
장애인 치과 병원	전체	4,663,035	100%	-	4,663,035	100%	-	4,240,344	100%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2,730,320	58.6%	-	2,730,320	58.6%		2,601,666	61.4%	

26) 25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p.839(서울의료원), p.844 (보라매병원), p.853 (동부병원), p.862 (서남병원)

27) 서울의료원: ① 응급의료기관 긴급 보조금 지원 (약 7.6억), ② 인력지원 (약 11.4억), ③ 의사 집단행동 손실보전 (약 42.5억)
보라매병원: ① 응급의료기관 긴급 보조금 지원 (약 5.2억), ② 인력지원 (약 13.8억), ③ 의사 집단행동 손실보전 (약 76.6억)

28) "서울시, '25년 예산 48조407억...시민 건강과 안전에 방점·건전 재정 기초 유지"(24. 10. 31.)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P.9

29) 간호간병 통합병동 노후 의료용 침대 교체

나. 분석의견

향후 2025년 시민건강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현재 미편성된 시립병원 ‘손실보전금’에 대한 향후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향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사용할 예정인 총 663억원의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일반적으로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운영비는 의료기관의 진료수익 등을 통한 자체 부담이 원칙임.
- 다만, 공익적 목적의 서울의료원 및 시립병원은 첫째, 경제적 취약계층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민간에서 공급이 부족한 진료과목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둘째, 무상 또는 평균 가격 이하의 적정진료를 하여 비급여 진료 수입의 비중이 민간 대비 낮다는 점에서 셋째,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 공익적 보건의료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자체 진료 수익’과는 별개로 불가피하게 운영상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
- 그리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립병원들의 ‘공익적 의료활동’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동 ‘적자액’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공공의료 손실보전’이라는 항목의 ‘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시립병원’들을 지원하여 왔음.

〈2024년 시립병원 본 예산 대비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편성 비율〉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24년 본예산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약 162억	약 146억	약 139억	약 75억	약 130억	약 106억	약 80억	약 62억	약 114억	약 81억	약 46억	약 27억
100%	89.9%	100%	54.1%	100%	82.7%	100%	77.3%	100%	71.0%	100%	58.6%

- 그런데, 서울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① 서울의료원의 전체 운영보조 예산액은 약 6억 1천만원이며, 이 중 공공의료손실보전금은 0원임. ② 보라매병원 민간위탁금 예산액은 약 77.5억원이며, 이 중 공공의료손실보전금은 0원임. ③ 동부병원의 민간위탁금 예산액은 약 25억원이며, 이 중 공공의료손실보전금은 0원임. ④ 서남병원 민간위탁금 예산액은 약 46억원이며, 이 중 공공의료손실보전금은 0원임.

(2025년 시립병원 본 예산 대비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편성 비율)

서울 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북부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전체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전체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전체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전체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전체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전체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약 6.1억	미편성	약 77.5억	미편성	약 25억	미편성	약 46억	미편성	약 81억	약 68억	약 42억	약 26억
100%	0%	100%	0%	100%	0%	100%	0%	100%	83.4%	100%	61.4%

-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24년 11월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5년 본 예산(안)에 미편성된 ‘시립병원 손실보전금’을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그리고 이에 앞서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지난 2024년 9월 26일자로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규정을 활용해, “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재난관리기금” 총 663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라 밝혔음.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5조의2」 특례 규정 및 “의사 집단행동”을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해석한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할 때, “의원급, 병원급 및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목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재난관리기금 사용 관련 행정안전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명시한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손실 지원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손실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의사 집단행동 이전에 발생한 손실 또는 그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손실 등에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향후 2025년 시립병원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민건강국의 동 ‘손실보전금 미편성’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향후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아울러, 향후 사용할 예정인 재난관리기금 총 663억원의 세부 산출 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사료됨.

4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① 기금 총괄 현황

○ 시민건강국은 식품정책과 소관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동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 총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4년도말 기금 조성 총액은 약 512억 5,900만원,
-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약 89억 7,300만원, 지출액 약 33억 900만원,
-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총액은 약 569억 2,300만원,
- 총 조성 규모는 약 689억 7,400만원 (2025년도말 조성액 + 용자금 미회수채권)임.

<표>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㉑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㉒ =㉑+㉓
	수입액 ㉔	지출액 ㉕	증 감 ㉖	
51,259	8,973	3,309	5,664	56,923

※ ㉑,㉒ = 은행 예치금 + 통합기금 예탁금

※ ㉔ = 예치금 회수 수입 제외

※ ㉕ = 예탁금, 예치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2025년도말 조성액 ㉑	용자금 미회수채권 ㉒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 ㉓	총 조성 규모 ㉑+㉒+㉓=㉔
56,923	12,052	0	68,975

② 수입 현황

- 수입액: 89억 7,200만원 (증 44억 8,500만원/ '24년: 44억 8,700만원)
 - 주요 증감사유: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대폭 확대(20억 → 200억)된 '22년도 융자금이 '25년부터 본격적으로 회수되어 수입액 증액 편성

(단위: 백만원)

수입 계획 (예치금 회수 제외)			
구분	2024년(A)	2024년(B)	증감(B-A)
합계	4,487	8,972	4,485
융자금회수	1,653	5,607	3,954
이자수입	1,767	2,184	417
과징금징수	798	1,148	350
기타수입	269	33	△236

○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 계획

(단위: 천원)

구분	2024년(A)	2025년(B)	증감(B-A)	비고
합계	20,558,624	18,231,393	△2,327,231	-
융자금 회수	1,635,416	5,606,709	3,971,293	-
민간융자금 회수	1,635,416	5,606,709	3,971,293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이자수입	1,784,423	2,183,912	399,489	-
공공예금이자	214,440	405,727	191,287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17,324	22,804	5,480	융자금 이자
예탁금 이자	1,547,728	1,751,400	203,672	예탁금 이자
보조금 잔액 이자	4,931	3,981	△950	보조금 반납액 이자
과징금 징수	798,460	1,148,685	350,225	-
과징금	798,460	1,148,685	350,225	과징금 징수금
예치금 회수	16,071,528	9,258,698	△6,812,830	-
예치금 회수	16,071,528	9,258,698	△6,812,830	전년도 이월금
기타수입	268,797	33,389	△235,408	-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262,985	26,618	△236,367	시도비 반환금 수입
민간보조금 사용잔액	5,812	6,771	959	민간보조금 사용 잔액

③ 지출 현황

○ 지출액: 33억 900만원 (감 9억 8,600만원/ '24년 42억 9,500만원)

- 주요 증감사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비 조정으로 지출액 감액 편성
(단위: 백만원)

지 출 계 획			
구 분	2024년(A)	2025년(B)	증감(B-A)
합 계	4,295	3,309	△986
용자성사업	2,000	1,500	△500
비용자성 사업	2,290	1,804	△486
기본경비	5	5	0

○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단위: 천원)

구분		2024년(A)	2025년(B)	증 감(B-A)
합 계		20,558,624	18,231,393	△2,327,231
용자성사업 (1개)		2,000,000	1,500,000	△500,000
1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용자지원	2,000,000	1,500,000	△500,000
비용자성사업 (12개)		2,294,926	1,803,630	△491,296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34,000	34,000	0
3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	554,200	416,900	△137,300
4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185,000	185,000	0
5	먹거리 통계 및 기반구축	248,400	236,400	△12,000
6	먹거리전략 식거버년스 운영 및 활성화	13,000	13,000	0
7	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운영 및 유지보수	302,526	72,530	△229,996
8	식품안전 전문교육	100,000	100,000	0
9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414,300	373,300	△41,000
10	전통시장 위생지도	16,000	10,000	△6,000
11	서울시민 식품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사업	20,000	10,000	△10,000
12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352,500	352,500	0
-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 교육 운영 (폐지)	55,000	0	△55,000

구분	2024년(A)	2025년(B)	증 감(B-A)
예치금	9,258,698	4,922,763	△4,335,935
여유자금 예치	9,258,698	4,922,763	△4,335,935
예탁금	7,000,000	10,000,000	3,000,000
여유자금 예탁	7,000,000	10,000,000	3,000,000
기본경비	5,000	5,000	0
기금관리비	5,000	5,000	0

④ 사업 현황

○ 기금사업 총괄표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	비고
사업 수	13개	12개	약 △1	사업비 조정, 사업종료
사업 예산	약 4,295백만원	약 3,304백만원	약 △991	

- **감액사업**(7개, △936백만원):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용자지원 (△500백만원),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 (△137백만원), 전통시장 위생지도 (△6백만원), 떡거리 통계 및 기반구축 (△12백만원),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41백만원), 식품안전정보 누리집 운영 및 유지보수 (△230백만원), 서울시민 식품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 (△10백만원)
- **종료사업**(1개, △55백만원):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 교육 운영 (△55백만원)

○ 기금사업별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24년 최종 예산	집행률 (%)	25년 예산(안)	증감
1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용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위생영업의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개선 및 육성자금 용자 - 시설개선자금: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기기·설비 설치비용 - 육성자금: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음식점 메뉴 개선 등을 위한 운영비 	2,000	24.77%	1,500	△500

연 번	사업명	사업개요	24년 최종 예산	집행률 (%)	25년 예산(안)	증감
2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교육 및 운영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식품안전(위생) 지도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위생 감시의 효율적 수행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해측 및 직무교육 실시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실무연수회 개최	34	88.69%	34	0
3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	○ 식품접객업소 기존영업자 등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식품위생 교육기관의 비용부담 경감 및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 - 교육기간: 3 ~ 12월 - 교육내용: 식품위생 관련 법규 해설 및 위생시책, 식중독 예방 등	554	73.56%	417	△137
4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 식중독 발생 저감을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 강화로 식품안전위해요소 사전 제거 - 식중독 예방 실천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시설 등 집중관리	185	48.96% (원인: 73.42%)	185	0
5	먹거리 통계 및 기반구축	○ 서울시민의 먹거리 관련 통계 파악 및 식생활 변화 추적관리를 위해 조사 실시 등 - 서울시 먹거리통계조사 - 서울도시먹거리 국제콘퍼런스 개최 등	248	41.28% (원인:93.97%)	236	△12
6	먹거리전략 식 거버넌스 운영 및 활성화	○ 시민과 함께 만드는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한 시민협치 활성화 및 통합추진 체계 구축 -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 및 먹거리정책 전문가 자문회의 - 먹거리 정책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신규사업 실행 지원 등	13	58.46%	13	0
7	식품안전정보 누리집 운영 및 유지보수	○ 식품안전정보(FSI) 누리집 유지관리 및 운영시스템 재구축 - 콘텐츠 관리(추가, 자료 현행화 등) -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른 재구축 - 마약류 의심 식품검사 시민 온라인 신청기능 개발 등	303	85.43% (원인:90.94%)	73	△230
8	식품안전 전문 교육	○ 식품안전 교육을 통해 식품위생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관리능력 향상으로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 - 식품안전 전문교육 과정(식품위생감시원 신규 및 보수 교육) - 산업체 맞춤형 컨설팅 및 현장교육과정	100	49.7% (원인:97.95%)	100	0

연 번	사업명	사업개요	24년 최종 예산	집행률 (%)	25년 예산(안)	증감
9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민관합동 지도점검 및 홍보 -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 판매업소 등 민관합동 점검	414	55.74% (원안: 76.45%)	373	△41
10	전통시장 위생 지도	○전통시장의 위생수준향상 및 판매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전통시장 활성화 - 시민참여 식품안전 지도 및 홍보	16	96.81%	10	△6
11	서울시민 식품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	○새로운 환경변화 등 시대상황에 대응 가능한 선제적 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 위해요소 개선 사업 추진 - 정기 위해요인 발굴 추진단 운영	20	33.85% (원안: 97.5%)	10	△10
12	자치구 식품안 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식품위생(안전)·식생활 등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지원으로 시민의 안전한 식품환경 도모 - 평가대상 기간 : '23.10월~'24. 9월 ※평가시기 : '24. 10월~11월 - 평가방법 : (정량평가) 자치구 실적·증빙 자료 검토 및 (정성평가) 평가위원회 운영	353	99.29%	353	0

- 2025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사업을 분석한 결과, 향후 서울시의회 예산안 예비 심사 과정에서는 ①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② 마약류 중독치료 의료기관(동행의원) 운영, ③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운영 및 시스템 구축 운영, ④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 ⑤ 서울시(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⑥ (출연 또는 민간위탁) 시립병원 4개소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예산 미편성 관련하여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첫째,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은 i) 2024년도 예산안에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비 지원 예산의 자치구 분담 여부 및 계획 등을 제시하지 않아 결국 의회 예산심의 단계에서는 전체 지원 예산 규모 등을 알 수 없었음. 이는 결국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시민건강국은 자치구 분담 여부 및 그 계획 관련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예산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ii)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을 위한 지원 예산 규모의 적절성 검토와 보건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서울시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둘째, ‘마약류 중독치료 의료기관(동행의원) 운영’은 i) 현재 경찰의 치료 연계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지정된 의료기관을 홍보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러한 현 상황에서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및 20대 마약사범과 아직 검거되지 않은 마약류 중독환자들을

어떻게 이 서울형 중독치료 동행의원 시스템에 유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 ii) 특정 의료기관 쏠림 현상의 원인 분석과 중독환자 본인에 대한 지원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고, iii)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중독치료 동행의원에 대하여 진료지원금 지급의 적정성과 허위 청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증 절차’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셋째,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운영 및 시스템 구축 운영’은 i) 손목닥터 9988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규참여자 수’와 ‘기존참여자 수’를 산출하여 이들이 실제 적립 및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해야 하는데, 현시점에서는 서울시 추계에 대한 정확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ii) 손목닥터 9988 사업은 최종 목표가 서울시민 330만명 ‘모집’이 아니라 스마트 위치와 9988 앱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개선’ 시키는 것이므로, 본 사업 목표에 맞는 성과를 측정 및 평가하기 위해서는 건강 관련 결과지표(outcome)를 설정하고 매년 계획된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넷째,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은 i)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한 그간 추진 실적 부진 문제,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ii) 예산안 편성 전 법령에 따른 사전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여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서울시(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i) 동 사무의

성과를 내·외부에서 평가한 “민간 위탁 종합성과평가(’24.4월)” 및 “2024년 주요 재정 사업 평가”에서 동 사무가 “75점 미만의 필요적 재계약 배제 점수”인 “73점”과 “원칙적으로 예산 10% 이상 삭감 적용” 대상인 “미흡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ii)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들이 동센터의 예산(안)에 대해 지적한 사항 (강사료 및 다과비 예산 과다 계상, 유사 중복 사업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여섯째, ‘(출연 또는 민간위탁) 시립병원 4개소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예산 미편성 관련, 향후 2025년 시민건강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현재 미편성된 시립병원 ‘손실보전금’에 대한 향후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향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사용할 예정인 총 663억원의 세부 산출 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사료됨.